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내용

현행	개정
제6조 (협력업체운영심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운영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당연직위원은 주관부서장, 경영기획담당부서장, 총괄부서장 및 <u>품질안전환경담당부서장</u>으로 한다. 다만,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위반 심의는 감사담당부서장을, 보안 사고 관련 심의는 보안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한다.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한 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생략) ③ (생략)	제6조 (협력업체운영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당연직위원은 주관부서장, 경영기획담당부서장, 총괄부서장 및 <u>품질안전담당부서장</u>으로 한다. 다만,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위반 심의는 감사담당부서장을, 보안 사고 관련 심의는 보안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한다.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한 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 및 제한) ① 협력분야별 등록업체는 협력분야별로 5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u>1</u>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력분야별로 등록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2조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 및 제한) ① 협력분야별 등록업체는 협력분야별로 5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력분야별로 등록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협력분야별 중복등록)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당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을 등록할 때 동일인을 중복하여 다른 협력분야에 등록되게 할 수 없다.	제13조 (협력분야별 중복등록)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될 수 있다. <u>다만,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당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을 등록할 때 동일 활용분야 내 다른 협력분야에 동일인을 중복하여 등록되게 할 수 없다.</u>

현행	개정
제17조 (등록평가 부서장과 평가자의 자격요건) ① 평가항목별 평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보유상태 및 사업수행실적(시공능력) 평가 : 소관부서장 평가 2.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평가 : <u>품질안전환경부서장</u> 3. 경영상태 등 평가 : 주관부서장 ② 제1항의 각 호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부서장이 지정한다. 1. (생략)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참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3. (생략)	제17조 (등록평가 부서장과 평가자의 자격요건) ① 평가항목별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부서장이 지정한다. 1. 인력보유상태 및 사업수행실적(시공능력) 평가 : 소관부서장 2.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평가 : <u>품질안전담당부서장</u> 3. 경영상태 등 평가 : 주관부서장 ② 제1항의 평가자 지정시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참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부합하는 평가자가 없을 경우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직원 중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제18조 (등록평가의 방법) ① 등록평가는 제15조에 따른 1차 평가와 제16조에 따른 2차 평가로 구분하며, 기본자격요건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1차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2차 평가를 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본부장의 협력업체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1차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2차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평가 시 경영상태 신용도 점수는 최저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② 1차 평가는 주관부서장이 수행하며, 2차 평가는 제17조에 따른 평가부서장이 수행한다. ③ ~ ⑥ (생략)	제18조 (등록평가의 방법) ① 등록평가는 제15조에 따른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부합여부(이하 '1차 평가'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기본자격요건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제16조에 따른 2차 평가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협력업체추천서)에 의거 1차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2차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평가 시 경영상태 신용도 점수는 최저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② 1차 평가의 평가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며, 2차 평가의 평가자는 제17조에 따른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20조 (협력약정체결, 등록 및 유효기간) ① ~ ④ (생략) ⑤ 협력약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협력업체는 만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 등록 평가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자격 갱신 심사를 <u>적용하되</u>,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외의 기본자격요건 평가는 제외한다. <신설> <신설> ⑥ ~ ⑧ (생략)	제20조 (협력약정체결, 등록 및 유효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력약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협력업체는 만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 등록 평가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자격 갱신 심사를 <u>적용하되, 세부평가기준은 각 소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u>,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이외의 기본자격요건 평가는 제외한다. ⑥ 갱신심사의 경우 협력약정 유효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약정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⑦ 갱신심사 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25조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수행실적평가 시 평가대상 협력업체(당해년도 기성실적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u>자체이행평가[사업수행실적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u>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이행평가를 요청받은 협력업체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발주사업(기타 지원부문 포함, 이하 ‘사업’이라 칭함)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급, 납품, 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이행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관리대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u>제1항의 협력업체가 작성한 자체이행평가표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u> 다음 각 호에 의거 <u>사업수행실적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u>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항목별 평가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공정, 사업관리, 가점, 별점 항목 : <u>소관부서</u> 나. 품질 항목 : <u>품질부서</u>	제25조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수행실적평가 시 평가대상 협력업체(당해년도 기성실적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u>별지 제10호서식(자체이행평가[사업수행실적평가표])</u>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이행평가를 요청받은 협력업체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발주사업(기타 지원부문 포함, 이하 ‘사업’이라 칭함)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급, 납품, 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이행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관리대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u>협력업체가 작성한 제1항의 자체이행평가표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u> 다음 각 호에 의거 <u>별지 제7호서식(사업수행실적평가표)</u>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항목별 평가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공정, 사업관리, 가점, 별점 항목 : <u>사업부서</u> 나. 품질 항목 : <u>품질안전담당부서</u>

현행	개정
다. 보안 항목 : 보안부서 4.~ 5. (생략) ③ (생략) <신설>	다. 보안 항목 : 보안부서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확인된 품질항목 문제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품질안전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장에게 품질항목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u>
제26조의2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① ~ ④ (생략) ⑤ 소관부서장은 협력업체들 중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2회 유예할 수 있으나, 3회차 정기평가 시에도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지업체로 <u>추천해야 한다.</u> 다만, 해지업체 추천대상 제외는 제4항을 따른다. ⑥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이 작성한 부의 안전에 대해 해당 내용 검토 후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u>포상 및 해지여부 등을 결정한다.</u>	제26조의2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관부서장은 협력업체들 중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2회 유예할 수 있으나, 3회차 정기평가 시에도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지업체로 <u>추천할 수 있다.</u> 다만, 해지업체 추천대상 제외는 제4항을 따른다. ⑥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이 작성한 부의 안전에 대해 해당 내용 검토 후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u>해지여부를 결정한다.</u>
제27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u>1</u>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지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16호, 제18호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5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u>품질</u>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현	제27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지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16호, 제18호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5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u>품질, 보안수준</u>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

현행	개정
제 있는 경우 : 재등록 제한 1년 11. ~ 18. (생략)	저하계 문제 있는 경우 : 재등록 제한 1년 11. ~ 18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 (부적격업체의 선정 및 제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적격업체에게는 해당협력분야에 한해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심사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u>선정된 시점 이후</u> 1년간으로 한다.	제30조의2 (부적격업체의 선정 및 제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적격업체에게는 해당협력분야에 한해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심사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u>부적격업체에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u> 1년간으로 한다.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u>첨부 1</u>) 별표 2. 업체평가기준(<u>첨부 2</u>) 별지 제5호서식. 표준협력약정서(<u>첨부 3</u>) <u><신설></u>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u>첨부 1</u>) 별표 2. 업체평가기준(<u>첨부 2</u>) 별지 제5호서식. 표준협력약정서(<u>첨부 3</u>) <u>별지 제10호서식. 사업수행실적 자체이행평가표(첨부 4)</u>
부칙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1.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기술분야	활용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품 질	공통	품질검사	- 기계부문의 용접분야, 건설부문의 품질시험 분야,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품질안전환경 담당부서
사업관리	공통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인력(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보유자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발전	- 원자력부문의 원자력·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원자력발전 담당부서
기 계	플랜트, 원자력, 원자로	기계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플랜트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설비 부분의 설비분야 또는 -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플랜트, 원자력	소방설비	-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배 관	플랜트, 원자력	배관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배관설계 담당부서
전 기	플랜트, 원자력	전기설계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 (종합 또는 전문1종)자	전기설계 담당부서
계 측	플랜트, 원자력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원자로	원전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건 축	플랜트, 원자력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건축 담당부서

기술분야	활용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토 목	플랜트, 원자력	토목구조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육상측량	- 건설부문의 측량·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u>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u> 에 의한 측량업자	
		수로측량	- <u>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u> 에 의한 수로사업자	
		도로 및 공항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 및 기초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질 및 지반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항만 및 해안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플랜트	상하수도	-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환 경	플랜트	환경현황조사	-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u> 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	환경기술 담당부서
		해양	- 해양·수산부문의 해양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환경 및 화학설비설계	-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분야 또는 화학부문의 화공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정 보	공통	정보기술	- 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기술 담당부서

비 고

1.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2. 전문건설공사 부문

공사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기계/배관공사	기계설치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담당부서
	배관	기계설비공사업	
	철골	강구조물공사업	
	탱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설비	기계설비공사업	
	기타 기계공사 (중량물 운반/설치, 도장, 보온)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계장공사	전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 담당부서
	계장		
토목/건축공사	토공	토공사업	토목/건축공사 담당부서
	포장	포장공사업	
	강구조물	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 · 창호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보링 · 그라우팅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상 · 하수도설비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도장	도장공사업	
	미장 · 방수 · 조적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비계 · 구조물해체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석공	석공사업	
	실내건축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공사담당부서
	풍력	풍력전문기업	

비 고

1. 기계/배관공사, 토목/건축공사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함.
2. 신·재생에너지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중 태양에너지전문기업 및 풍력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를 말함

3. 기타지원 부문

지원분야	협력분야		자 격 요 건	소관부서
	활용	분야		
기자재 구매	공통	물류/운송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물류/운송 담당부서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1.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기술분야	활용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품 질	공통	품질검사	- 기계부문의 용접분야, 건설부문의 품질시험 분야,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품질안전 담당부서
사업관리	공통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인력(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보유자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발전	- 원자력부문의 원자력·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원자력발전 담당부서
기 계	플랜트, 원자력, 원자로	기계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플랜트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설비 부분의 설비분야 또는 -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플랜트, 원자력	소방설비	-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배 관	플랜트, 원자력	배관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배관설계 담당부서
전 기	플랜트, 원자력	전기설계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1종)자	전기설계 담당부서
계 측	플랜트, 원자력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원자로	원전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건 축	플랜트, 원자력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건축 담당부서

기술분야	활용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토 목	플랜트, 원자력	토목구조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육상측량	- 건설부문의 측량·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u>	
		수로측량	-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수로사업자</u>	
		도로 및 공항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 및 기초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질 및 지반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항만 및 해안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플랜트	상하수도	-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환 경	플랜트	환경현황조사	-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u>	환경기술 담당부서
		해양	- 해양·수산부문의 해양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환경 및 화학설비설계	-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분야 또는 화학부문의 화공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정 보	공통	정보기술	- 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u>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u>	정보기술 담당부서

비 고

1.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2. 전문건설공사 부문

공사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기계/배관공사	기계설치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담당부서
	배관	기계설비공사업	
	철골	강구조물공사업	
	탱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설비	기계설비공사업	
	기타 기계공사 (중량물 운반/설치, 도장, 보온)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계장공사	전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 담당부서
	계장		
토목/건축공사	토공	토공사업	토목/건축공사 담당부서
	포장	포장공사업	
	강구조물	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 · 창호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보링 · 그라우팅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상 · 하수도설비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도장	도장공사업	
	미장 · 방수 · 조적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비계 · 구조물해체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석공	석공사업	
	실내건축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공사담당부서
	풍력	풍력전문기업	

비 고

1. 기계/배관공사, 토목/건축공사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함.
2. 신·재생에너지분야 각 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중 태양에너지전문기업 및 풍력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한 해당 업종의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를 말함

3. 기타지원 부문

지원분야	협력분야		자 격 요 건	소관부서
	활용	분야		
기자재 구매	공통	물류/운송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물류/운송 담당부서

업체평가기준

I.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5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5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품질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15	
공 통	감 점	<u>우리회사로부터 부정당제재</u>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9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협력분야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⑥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B미만 (소관 본부장 추천)	BB미만
평 가 점 수	35	33	31	29	27	25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 시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25점)를 적용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35	32	29	26	23	0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X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29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활용분야내에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⑤ 보유인력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건수기준	7.5	6.8	6.1	5.4	4.7
금액기준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7.5	6.8	6.1	5.4	4.7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7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④ 사업수행실적은 도급수행실적인 경우에 한한다.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한다.

① 우리회사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그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회사 적격심사 신인도 기준을 적용한다.

②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가·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사. 품질활동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 직 및 인 력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필요시)-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0%)				
시 스 템 수 립	품질시스템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 심사 수검 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 내 · 외 교 육 훈 련	대내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합 계		15	-				

II. 전문건설공사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10	
	시 공 능 력	협력분야별 해당 공종의 전국시공능력 평가 순위(단,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없는 공종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공사실적)로 평가	30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 안전/환경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20	
공 통	감 점	<u>우리회사로부터</u>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u>형사</u>	0 ~ <u>-9</u>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공사 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 ④ (삭제)
- ⑤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⑥ 공사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⑦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

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B미만 (소관 본부장 추천)	BB미만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시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30점)를 적용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10	9	8	7	6	0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X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8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의 해당 공종별 최근년도 전국시공능력 평가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상위 10%이내	상위10%이하 ~20%이내	상위20%이하 ~30%이내	상위30%이하 ~50%이내	상위 50%이하
평가점수	30	27	24	21	18

② 시공능력평가순위 발급이 없는 공종은 최근년도 해당 공종의 시공능력평가액(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15.0	13.5	12.0	10.5	9.0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실적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3억이상	13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15.0	13.5	12.0	10.5	9.0

② 협력분야별 건수 및 금액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한다.

- ① 우리회사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그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회사 적격심사 신인도 기준을 적용한다.
- ②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 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 직 및 인 력	품 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안전조직	1.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안전환경 전담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조직도 미제출)		
			안전관리자	유	무	유	무	
			평점	1.0 (100%)	0.8 (80%)	0.8 (80%)	0.0 (0%)	
	품 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0%)					
시 스	품 질시스템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템 수 립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안전환경시스템	4.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우수 : 4.0 (10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보통 : 3.6 (9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검험-유 : 3.2 (8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검험-무 : 0.0 (0%)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심사 수검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 내 · 외 교 육 훈 련	대내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합 계		20	-

사. 가.값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III. 기타지원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	30	
공 통	감 점	우리회사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한 경우 등	0 ~ -9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보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④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B미만 (소관 본부장 추천)	BB 미만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 시에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30점)를 적용한다.
-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⑥ 해당 협력분야의 업계 특성상 제1항의 신용평가등급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부서장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평점 및 대응등급은 조정할 수 없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12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평가점수	30	27	24	21	18	0

-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 등급별 계수)

<예 시>

등 급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경력 년 이상	10	1	1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평가점수 = 24점
경력 년 이상	8	2	2	
xx자격보유인력	6	3	3	
xx자격보유인력 등	4	4	5	
계량점수	-	60	64	

-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 ④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인력은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3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예 시>

구 분	평 점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건수기준	15.0	13.5	12.0	10.5	9.0
금액기준	10억 이상	10억 미만 ~ 7억 이상	7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3억 이상	3억 미만
	15.0	13.5	12.0	10.5	9.0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 (\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8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④ 해당 협력분야의 역무 특성상 제①항의 건수 또는 금액 기준 중 일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장은 당해 일방의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의 평점을 그 두 배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한다.

- ① 우리회사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그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회사 적격심사 신인도 기준을 적용한다.
- ②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가·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업체평가기준

I.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5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5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품질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15	
공 통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협력분야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⑥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

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B미만 (소관 본부장 추천)	BB미만
평 가 점 수	35	33	31	29	27	25	-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 시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25점)를 적용한다.
-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35	32	29	26	23	0

-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X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29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 ④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활용분야내에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 ⑤ 보유인력은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수기준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7.5	6.8	6.1	5.4	4.7
금액기준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7.5	6.8	6.1	5.4	4.7

-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7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 ④ 사업수행실적은 도급수행실적인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활동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 직 및 인 력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감사자/시험자(필요시)-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감사자/시험자-무 : 0.0 (0%)			
시 스 템 수 립	품질시스템 (*)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 심사 수검 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 내 · 외 교 육 훈 련	대내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합 계		15	-

(*) 품질시스템이 0점으로 평가될 경우, 품질시스템 도입 경과, 대외감사/심사 수검 실적(최근 2년)을 평가하지 않고 0점 처리한다.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한다.

- ①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 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계약 규범 이행	<u>가. 부정당제재</u> (1) <u>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u> - <u>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u> - <u>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u> - <u>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u> - <u>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u>	 △2.0 △1.5 △1.0 △0.5
	<u>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u> (1) <u>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u> (2) <u>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u> (3) <u>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u>	 △0.5 △1.0 △2.0
	<u>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u> ■ <u>위반 1건 (1명 기준)</u> ■ <u>위반 2건 (2명 기준)</u>	 △0.5 △1.0

②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한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 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값절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II. 전문건설공사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10	
	시 공 능 력	협력분야별 해당 공종의 전국시공능력 평가 순위(단,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없는 공종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공사실적)로 평가	30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 안전/환경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20	
공 통	감 점	<u>부정당제재</u>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u>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u>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기술자, 공사 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③ 보유기술자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 ④ (삭제)
- ⑤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⑥ 공사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⑦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

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B미만 (소관 본부장 추천)	BB미만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시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30점)를 적용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10	9	8	7	6	0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X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8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④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의 해당 공종별 최근년도 전국시공능력 평가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상위 10%이내	상위10%이하 ~20%이내	상위20%이하 ~30%이내	상위30%이하 ~50%이내	상위 50%이하
평가점수	30	27	24	21	18

② 시공능력평가순위 발급이 없는 공종은 최근년도 해당 공종의 시공능력평가액(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예 시 >

구 분	평 점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 미만
	15.0	13.5	12.0	10.5	9.0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실적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3억이상	13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15.0	13.5	12.0	10.5	9.0

② 협력분야별 건수 및 금액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만.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직 및 인 력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 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안전조직	1.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안전환경 전담조직	유(조직도 제출)		무(조직도 미제출)		
			안전관리자	유	무	유	무	
			평점	1.0 (100%)	0.8 (80%)	0.8 (8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0%)					
	시 스 템 수 립	품질시스템 (*)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안전환경시스템		4.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우수 : 4.0 (100%) ○안전환경시스템-유, 절차서/표준수립 상태-보통 : 3.6 (9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경험-유 : 3.2 (80%) ○안전환경시스템-무, 발주시스템 적용경험-무 : 0.0 (0%)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심사 수검실적 (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대 내 · 외 교육 훈련	대내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합 계		20	-

(*) 품질시스템이 0점으로 평가될 경우, 품질시스템 도입 경과, 대외감사/심사 수검 실적(최근 2년)을 평가하지 않고 0점 처리한다.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한다.

- ①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 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계약 규범 이행	가. 부정당제재 (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나. 최근 2년간 당사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1) 1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3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2) 2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3) 3회 이상 서면 경고 또는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5 △1.0 △2.0
	다.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위반 1건 (1명 기준) ■ 위반 2건 (2명 기준)	 △0.5 △1.0

②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값절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III. 기타지원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0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	30	
공 통	감 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보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④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B미만 (소관 본부장 추천)	BB 미만
평 가 점 수	40	38	36	34	32	30	-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 시에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30점)를 적용한다.
-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⑥ 해당 협력분야의 업계 특성상 제1항의 신용평가등급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부서장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평점 및 대응등급은 조정할 수 없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12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평가점수	30	27	24	21	18	0

-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 등급별 계수)

<예 시>

등 급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경력 년 이상	10	1	1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평가점수 = 24점
경력 년 이상	8	2	2	
xx자격보유인력	6	3	3	
xx자격보유인력 등	4	4	5	
계량점수	-	60	64	

-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 ④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인력은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최근 3년간 해당 협력분야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예 시>

구 분	평 점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건수기준	15.0	13.5	12.0	10.5	9.0
금액기준	10억 이상	10억 미만 ~ 7억 이상	7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3억 이상	3억 미만
	15.0	13.5	12.0	10.5	9.0

-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유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0.8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점은 조정할 수 없다.

- ④ 해당 협력분야의 역무 특성상 제①항의 건수 또는 금액 기준 중 일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장은 당해 일방의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의 평점을 그 두 배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한다.

- ① 부정당제재를 받은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 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상세 내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항목		평점
계약규범이행	가. 부정당제재 <u>(1)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u> <u>-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u> <u>-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u> <u>-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u> <u>-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u>	 <

② 당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첨부 3.

(현 행)

별지 제5호 서식

표준협력약정서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에 주소를 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약정자"라 한다)와
에 주소를 둔 (이하 "약정상대자"
"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약정자와 약정상대자가 국내·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데 있어 사업품질 향상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사간의 상호협력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및 범위)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2.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3.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자재 구매 또는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② 양사는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설계엔지니어링사업 (분야:)
2. 전 문 건 설 공 사 (분야:)
3. 기 타 지 원 (분야:)

③ 제2항의 협력분야에 대한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3.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④ 제3항에 규정된 양사간의 협력범위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조정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서를 갱신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력방법)

- ①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약정의 목적 및 협력범위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②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참여 또는 상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③ 양사는 국내·외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기술 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양사의 소속인력을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4 조 (비밀준수 및 지식재산권보호)

- ① 양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수행 또는 협력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기타 정보 및 자료는 본 약정의 기간 만료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 또는 비영업 목적으로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 ②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의 취지에 따라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상대방의 경영, 기술, 인력현황, 사업수행경험은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 ③ 약정대상자는 약정자가 필요에 의해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증 및 책임)

- ① 양사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의 공동수행 중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6 조 (상호협조 및 신의성실의무)

- ① 양사는 본 약정서 제1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와 범위에 정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 ② 양사는 상호 당초 협력약정을 체결한 시점에서 확인된 자격과 요건을 협약이 지속되는 전 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 ③ 어느 일방에서 제2항의 요건과 자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이의 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기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8 조 (유효기간)

-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양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력 약정이 유지되며,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이 해지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가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 ② 약정상대자는 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약정상대자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약정자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 갱신 심사 완료시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 ④ 약정자가 재평가 시행을 하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9조에 의해 협력 약정이 정지된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재개된다.

제 9 조 (약정의 정지 및 해지)

- ① 제8조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코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본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은 정지 또는 해지한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이 일정기간 제한 된다. 다만, 제5호,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제한 6개월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일방당사자에게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0.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 재등록제한 1년
1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2.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3.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에서 2년
 14. 협력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5.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6.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 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일방약정자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해지 사유가 특정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 할 수 있다.
- ⑤ 일방약정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 ⑥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당사자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위반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제 10 조 (용어의 해석 등)

본 약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경과조치)

본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협력약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년 월 일

약 정 자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

상 호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자 : 사장 (인)

약정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장 (인)

별첨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1부.

표준협력약정서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에 주소를 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약정자"라 한다)와
에 주소를 둔 (이하 "약정상대자"
"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약정자와 약정상대자가 국내·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데 있어 사업품질 향상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사간의 상호협력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및 범위)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2.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3.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자재 구매 또는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② 양사는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설계엔지니어링사업 (분야:)
2. 전 문 건 설 공 사 (분야:)
3. 기 타 지 원 (분야:)

③ 제2항의 협력분야에 대한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3.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④ 제3항에 규정된 양사간의 협력범위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조정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서를 갱신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력방법)

①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약정의 목적 및 협력범위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참여 또는 상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양사는 국내·외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기술 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양사의 소속인력을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4 조 (비밀준수 및 지식재산권보호)

① 양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수행 또는 협력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기타 정보 및 자료는 본 약정의 기간 만료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 또는 비영업 목적으로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의 취지에 따라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상대방의 경영, 기술, 인력현황, 사업수행경험은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③ 약정대상자는 약정자가 필요에 의해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증 및 책임)

① 양사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의 공동수행 중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6 조 (상호협조 및 신의성실의무)

- ① 양사는 본 약정서 제1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와 범위에 정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 ② 양사는 상호 당초 협력약정을 체결한 시점에서 확인된 자격과 요건을 협약이 지속되는 전 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 ③ 어느 일방에서 제2항의 요건과 자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이의 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기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8 조 (유효기간)

-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양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력 약정이 유지되며,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이 해지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가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 ② 약정상대자는 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약정상대자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약정자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갱신 심사 완료시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 ④ 약정자가 재평가 시행을 하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9조에 의해 협력약정이 정지된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재개된다.

제 9 조 (약정의 정지 및 해지)

- ① 제8조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코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본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은 정지 또는 해지한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이 일정기간 제한 된다. 다만, 제5호,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제한 6개월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일방당사자에게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보안준수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0.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2.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3.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에서 2년
 14. 협력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5.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6.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 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일방약정자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해지 사유가 특정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 할 수 있다.
- ⑤ 일방약정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 ⑥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당사자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위반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제 10 조 (용어의 해석 등)

본 약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경과조치)

본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협력약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년 월 일

약 정 자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

상 호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자 : 사장 (인)

약정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장 (인)

별첨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1부.

사업수행실적 자체이행평가표

(평가대상기간 : 20XX.01.01. ~ 20XX.12.31.)

업체명		대표자		협력분야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기성금액 (20XX년도)			
책임기술자		평가자 (PM)	직위:	성명 :	(인)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척 도		평점기준	배점	평 점	평가근거 (사유)
기 술 [50]	업무수행 능력 [40]	① 책임기술자 사업수행능력 - 기술능력, 관리능력 등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 교체 빈도 (-1점/1회당)		S,A,B,C,D	5		
		② 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능력 - 기술능력, 관리능력 등에 따라 평가 - 분야책임기술자 교체 빈도 (-1점/1회당)		S,A,B,C,D	5		
		③ 사업참여자 기술능력 수준 - 계약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 대비 - 사업참여자 교체 빈도(-0.5점/1회당)		S,A,B,C,D	5		
		④ 자원준비 여부(code&Std., 설계용S/W 등)		S,A,B,C,D	5		
		⑤ 설계점검(Checkprint) 및 설계검토 수행여부 - 점검결과 및 검토결과 제출비율 (미제출건수/전체 제출건수 X 100)		(-1점/5%)	5		
		⑥ 제출 설계성과물의 완성도 - 성과물 접수 시 불합격 비율 (불합격건수/전체 제출 건수 X 100)		(-1점/5%)	15		
	업무협조 [5]	⑦ 기술 업무 및 계약 지원		S,A,B,C,D	5		
	중첩도[5]	⑧ 책임기술자 및 사업참여자 업무중첩도 여부 - 3개 이상 사업수행 시 적용		(-1점/3개)	5		
품 질 [15]	성과품질 [5]	⑨ 사업수행기간 또는 품질활동(감사 등) 수행 중 중대결함이나 심각한 품질문제 발생 시 - 품질보증(경영) 계획 및 운영상의 중대결함 - 중대 설계결함으로 인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설계성과물에 의한 건설 및 운영 중 중대 설계 결함 으로 광범위한 재평가, 재설계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유(0)/무(5)	5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척 도	평점기준	배점	평 점	평가근거 (사유)														
	품질활동 [10]	⑩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 유지 여부	유(5)/무(0)	5																
		⑩ 해당 사업 품질보증(경영)계획서 승인 여부	유(5)/무(0)	5																
공 정 [20]	일정준수 [15]	⑪ 성과물 제출일정 준수 - 성과물, 공급자 도서 검토 - 제출건수 대비 지연건수 발생율 (지연건수 / 전체제출 건수 X 100)	(-1점/5%)	15																
	제출지연 [5]	⑫ 성과물 누적제출지연 - 성과물, 공급자 도서 검토 - 최초 및 재제출 지연비율 (누적지연건수 / 전체제출 건수 X 100)	(-1점/5%)	5																
사업관리 [10]	사업관리 [10]	⑬ 사업 계획/준비 및 종결 미흡 - 수행계획서, 종결보고서 지연/미제출 등	(-1점/1회당)	10																
보 안 [5]	보안감사 [5]	⑭ 보안 감사 실사결과 - 평가대상 직전년도 실사 점검 평균 <table border="1"><tr><td>300점 이하</td><td>275점 미만</td><td>250점 미만</td><td>200점 미만</td><td>100점 미만</td></tr><tr><td>275점 이상</td><td>250점 이상</td><td>200점 이상</td><td>100점 이상</td><td></td></tr><tr><td>S</td><td>A</td><td>B</td><td>C</td><td>D</td></tr></table>	300점 이하	275점 미만	250점 미만	200점 미만	100점 미만	275점 이상	250점 이상	200점 이상	100점 이상		S	A	B	C	D	S,A,B,C,D 5		
300점 이하	275점 미만	250점 미만	200점 미만	100점 미만																
275점 이상	250점 이상	200점 이상	100점 이상																	
S	A	B	C	D																
가 점 [2]	정보보안 준수	⑮ 정보보안체계구축 - 공인된 정보보호경영체계(ISMS)또는 ISO27001 인증서 보유	있음:2 없음:0	2																
별 점	계약관리	• 계약 요건의 심각한 위반 - 재하도급 미승인, 참여자 변경 미승인 등	(-2.5점 /1회당)	-																
	파트너쉽	• 발주자의 업무수행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경고발생 - 공식 문서(공문, FAX 등)	-5점 /발생시	-																
계				100																

비고

1. 각 평가척도의 평가대상은 해당 평가기간 중에 일어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척도 중 감점요인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없는 경우는 평점 계산시 제외한다.
3.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평점기준
 - S (탁월, 5점), A(우수, 4점), B(보통, 3점), C(미흡, 2점), D(불량, 1점)
 - 감점의 경우 최저점은 0점으로 한다.
 - 나. 분야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와 통합 가능
 - 다. 가점은 평가항목(기술, 품질, 공정, 사업관리, 보안)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